

(재)우체국공익재단 종합감사 지적사항

□ 감사기간: 2023. 9. 4.~9. 8.(5일)

순번	조치 구분	지적사항(요지)	비 고
1	경고 요구 및 통보	□ 복무 관리 부적정 ○ 직원은 복무관리를 소홀(12명이 총 195회 출근 지연등록·퇴근 조기등록)히 하고, 부서장은 근태 상황을 점검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유연근무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⇒ 관련 기관에 ‘기관경고’ 요구 및 관리·감독 철저	
2	통보	□ 취업규칙 근로자 의견수렴 및 신고업무 누락 ○ 직제규정 개정(‘20. 12월)으로 신고대상이 되었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수렴과 신고 절차를 누락(4회, 6건) ⇒ 근로자 의견수렴 및 신고업무 관리·감독 철저	
3	통보	□ 직원 채용업무 미흡 ○ 채용 단계별 공정성 확보 없이 직원 채용업무를 진행(11회, 17명) ⇒ 국가·공공기관의 채용관련 법령·지침을 참고하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및 관리·감독 철저	
4	통보	□ 공익사업 위탁기관 선정업무 미흡 ○ 위탁기관 선정 시 정성평가만 실시, 위탁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재공모 미실시, 위탁업체에 선금 지급 시 채권 미확보 ⇒ 위탁기관 선정평가 시 정량평가 도입, 주요사업 조건 변경 시 재공고,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방안 마련	
5	통보	□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업무 미흡 ○ 연구용역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증빙자료 없이 대금 전액 지급 ⇒ 연구용역 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체결,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안 마련	

순번	조치 구분	지적사항(요지)	비 고
6	통보	□ 행복나눔봉사단 활동경비 지원 업무 미흡 ○ 지원금 지급액, 봉사활동 성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아 지원금액의 40.7%(20,303천원)이 반납('22년) ⇒ 행복나눔봉사단 활동경비 지원은 관서별 봉사활동 빈도와 규모를 고려한 차등 지급방안 검토	